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200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C호 33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4. 5. 7.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기동

별지